



## < 변경전 >

2018. 9. 13 개정

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8-약관-098호 (2018.7.31)

# 『KEB하나 행복지킴이 통장』 특약

## 제 1 조 적용범위

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 등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'KEB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' (이하 '이 예금'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「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」 및 「예금거래기본약관」을 적용합니다.

## 제 2 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합니다.

- 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서 정하는 기초생활 수급자
- ② 「기초연금법」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
- ③ 「장애인연금법」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
- ④ 「장애인복지법」에서 정하는 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
- ⑤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
- ⑥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
- ⑦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서 정하는 긴급지원 등의 수급자
- ⑧ 「아동수당법」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
- ⑨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

## 제 3 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으로 합니다.

## 제 4 조 이자지급

-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다음 이자계산기준일에 셈하여 해당 원가일에 원금에 더합니다.
  1. 이자계산기준일: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의 제3금요일
  2. 원가일: 이자계산기준일 다음날
- ② 이 예금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다음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,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에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저축예금 금리로 이자를 계산합니다.

## 제5조 우대금리

- ① 이 예금에 원가일(또는 해지일)이 속한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제 2 조 제 4 항에 해당되는 "장애(아동)수당" 또는 제 2 조 제 8 항에 해당되는 "아동수당"의 수급실적이 1 회 이상 있는 경우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. 단, 2018 년 9 월이후 입금되는 수급실적에 한 하며, 우대금리는 제 4 조 제 2 항의 이자계산기간에 셈하여 지급합니다.

- ② 이 예금의 우대금리는 만 5 세이하 가입자에게 제공되며, 해당고객이 만 5 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이 포함된 결산시까지 적용합니다.
- ③ 우대금리 제공시에는 제4조 제2항의 금리는 추가 적용하지 않습니다.

### **제 6 조 입금제한**

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법령에 따라 제 2 조의 가입대상에게 지급되는 압류금지 수급금 등에 한하며, 그 이외에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.

### **제 7 조 거래제한**

- ① 이 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.
- ②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.
- ③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.
- ④ 이 예금은 통장대출(한도대출)의 대출계좌(기본계좌)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⑤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, 결제금액 또는 납부 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취소 또는 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제 4 조의 입금제한(입금은 압류금지 수급금등에 한한다)에 따라 예금주가 직접 해당기관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을 납부하거나(또는 해당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)예금주가 해당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.

### **제 8 조 수수료 우대서비스**

이 통장을 통한 아래의 거래에 대하여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- ①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또는 당,타행 이체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
- ② 폰뱅킹(ARS)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
- ③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,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
- ④ 납부자 자동이체(타행 자동이체 포함)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
- ⑤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면제

## <변경후>

2019. 4. 1 개정

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9-약관-038호 (2019.2.27)

# 『KEB하나 행복지킴이 통장』 특약

### 제 1 조 적용범위

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 등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'KEB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' (이하 '이 예금'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「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」 및 「예금거래기본약관」을 적용합니다.

### 제 2 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합니다.

- 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서 정하는 기초생활 수급자
- ② 「기초연금법」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
- ③ 「장애인연금법」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
- ④ 「장애인복지법」에서 정하는 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
- ⑤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
- ⑥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
- ⑦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서 정하는 긴급지원 등의 수급자
- ⑧ 「아동수당법」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
- ⑨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
- ⑩ 「**아동복지법**」에서 정하는 **자립수당 수급자**

### 제 3 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으로 합니다.

### 제 4 조 이자지급

-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다음 이자계산기준일에 셈하여 해당 원가일에 원금에 더합니다.
  1. 이자계산기준일: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의 제3금요일
  2. 원가일: 이자계산기준일 다음날
- ② 이 예금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다음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,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에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저축예금 금리로 이자를 계산합니다.

### 제5조 우대금리

- ① 이 예금에 원가일(또는 해지일)이 속한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제 2 조 제 4 항에 해당되는 “장애(아동)수당” 또는 제 2 조 제 8 항에 해당되는 “아동수당”의 수급실적이 1 회 이상 있는 경우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. 단, 2018 년 9 월이후 입금되는 수급실적에 한 하며, 우대금리는 제 4 조 제 2 항의 이자계산기간에 셈하여 지급합니다.

- ② 이 예금의 우대금리는 **만 6 세이하** 가입자에게 제공되며, 해당고객이 **만 6 세가** 종료되는 달의 말일이 포함된 결산시까지 적용합니다.

### 제 6 조 입금제한

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법령에 따라 제 2 조의 가입대상에게 지급되는 압류금지 수급금 등에 한하며, 그 이외에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.

### 제 7 조 거래제한

- ① 이 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.
- ②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.
- ③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.
- ④ 이 예금은 통장대출(한도대출)의 대출계좌(기본계좌)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⑤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, 결제금액 또는 납부 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취소 또는 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제 4 조의 입금제한(입금은 압류금지 수급금등에 한한다)에 따라 예금주가 직접 해당기관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을 납부하거나(또는 해당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)예금주가 해당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.

### 제 8 조 수수료 우대서비스

이 통장을 통한 아래의 거래에 대하여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- ①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또는 당,타행 이체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
- ② 폰뱅킹(ARS)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
- ③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,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
- ④ 납부자 자동이체(타행 자동이체 포함)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
- ⑤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면제